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안)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시, 겸직 허가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있음

2023. 12.



교육부

1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증폭

« 관련 규정 »

-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종사 불가, 소속기관의 장 허가 없이 겸직 불가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개념 및 요건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금지되는 영리업무가 아닌 경우의 겸직허가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상기 법령에 대한 세부적 규정

- 특히, 사교육업체의 콘텐츠 종류·개발 범위 등이 확대되면서 교원이 금지 대상 영리업무에 무분별하게 가담하는 사례 증가
- 사교육 관련 금지 대상 영리업무 범위 및 겸직 허가기준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범위·사례 등을 구체화하여 안내 필요

□ 주요 경과

-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구성·운영('23.6~, 4차)
 -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강화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6.22~)
 - 수사의뢰 4건, 공정위 조사요청 25건, 교육청 합동점검 29개소 등 엄정 대응(계속)
-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6.26)
-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실시(8.1~8.14)
 - 감사원 감사 지원(9.3.~), 수능출제진 24명 고소 및 수사의뢰 조치(9.22.)
-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10.19~11.1)

2 **겸직허가 제도**

□ **겸직허가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 금지) 및 제26조(겸직허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겸직허가 제도 운영**

- (대상) 복무규정 제25조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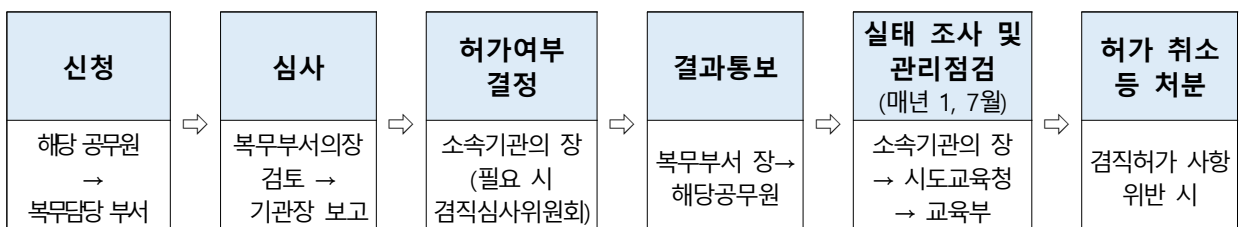
«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 »

-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 분	영리업무	비영리업무
계속성 있는 경우	겸직 허가 대상	겸직 허가 대상
계속성 없는 경우	-	-

※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행위가 아니면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성이 없는 행위는 겸직허가의 대상은 아니나 복무 상 의무(품위유지 등)에 따라 규율

- (허가기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
- (절차 및 방법)



3

주요 현황 및 진단

□ 검직 허가 현황

- (학교급별)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검직 허가 증가 추세

< 검직 허가 현황(연도/학교급) >

(단위 : 명)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합계
'23	190	4,865	1,680	2,694	500	9,929
'22	148	2,850	1,395	2,420	301	7,114
'21	70	2,219	1,124	2,058	200	5,671

- (내용별) 사교육업체 대상 모의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활동이 포함된 '자료개발 및 출제' 유형이 크게 증가

< 검직 허가 세부 현황 >

(단위: 명)

구분	자료개발 및 출제	외부 강의 (교수) 등	저술·연구활동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상담 또는 컨설팅	기관·단체 임원	기타*	합계
'23	907	3,579	1,408	1,033	544	861	1,597	9,929
'22	430	2,847	635	865	531	729	1,077	7,114
'21	475	1,925	568	796	278	894	735	5,671

* (기타) 예술활동(공연,영화,음악,사진 등), 기자 또는 방송 관련 활동, 종교활동, 태양광 사업 등

□ 영리행위 자진신고('23. 8.1~14) 결과

- 교원 322명, 총 344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사교육 관련 검직유형으로 모의고사 문항 출제, 교재제작, 강의 순으로 자진신고
- 학원 등 모의고사 출제 관련 신고 건수가 전체 건수의 60.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검직 허가 비율은 18.2%로 가장 낮은 상황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

구분	학원 등 모의고사	교재제작	강의	컨설팅	기타	합계
신고건수	209	63	30	21	21	344
검직허가 건수	38	36	24	14	8	120
검직허가 비율	18.2%	57.1%	80.0%	66.7%	38.1%	34.9%

□ 현장 방문 등 FGI 결과(서울, 경기, 인천)

-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영리행위 구체적 사례, 교원에 적합한 검직허가 신청 서식 및 체크리스트 등 현장 운영상 보완점 요구

<현장의견 수렴결과(FGI)>

구분	현장 주요의견
검직허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 구체적 허용 기준 필요 (예) 사설학원 모의고사 출제·검토는 금지하되, 출판사 연계 교과서, 참고서, 문제지 등 자료개발은 허용
제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직허가 운영과 관련 절차 등 개선 필요 (예) 신청서에 검직유형 및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기재 등 검직심사 자료 보완 필요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문항개발 등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교과서 집필과 연계한 자료 개발 허용 필요 ■ 현직교사의 참고서 및 문제지 출제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 사교육업체가 출제경향을 선도하는 상황 우려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영리행위 금지 및 검직허가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문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사교육업체 연계 교원의 영리행위가 급격히 증가

☞ 사교육 관련 업체 및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검직 금지 대상 안내 강화

- 검직 신청부터 검직 실태조사까지 교원의 검직활동 특성을 반영한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검직제도 절차 운영 미흡

☞ 검직허가 신청, 검직심사 절차 및 실태조사 자료 등 개선
▶ 검직허가 신청서 및 심사 시 체크리스트 등 보완 및 안내

- 형식적 실태조사(현행 연 2회)로 인해 검직허가 위반에 대한 적발이 어렵고, 적발 시 조치는 미흡

☞ 교원 검직 현황 점검 및 위반 시 조치 강화
▶ 검직허가 기간 단축(최대 2년→1년) 및 위반 시 엄중 처분 권고

4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안)

- ☞ 현행 법령상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관련 행위에 대해 오인하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
- ☞ 사교육업체 등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 공정성 확보 및 교육 신뢰 회복

□ 적용 대상 및 범위

- (목적) 국가공무원법령 범위 내에서 교원 대상 사교육업체 관련 금지 행위 및 사례를 구체화하여 현장 혼란 최소화 및 공교육 공정성 제고
- (적용대상) 유·초·중등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 (적용범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범위 내에서 사교육업체 관련 금지 사례 등 본 지침을 준수하여 심사
- (세부 기준) 시·도교육감은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본 지침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

□ 국가공무원법령 규정에 따른 원칙

- ①직무 능률 저하, ②공무에 부당한 영향, ③국익에 상반되는 이익 발생,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이 우려되는 영리행위는 금지
-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 가능
 - 단, 영리행위가 아니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도 겸직 허가 대상이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

①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 (범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붙임6)

- (업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학원, 학원 강사, 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

② 겸직 등 가능 여부 판단

-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및 예규 겸직 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 (계속성 없는 행위)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라 교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에서 과외교습 금지

- ③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허가 가능

*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 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예시 1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계약하여 문항 판매 및 교재를 제작하는 경우

-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된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 활용 등을 목적으로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

예시 2 검직을 금지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영리행위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 ▶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검직 신청 및 허가 대상은 아니나,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계속성과 관계 없이 검직을 금지하는 학원 등에서의 특강 등 활동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함
-

예시 3 일반출판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 ▶ 학원업과 관련없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 출판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교재 등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연장선에서 검직 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원격교습학원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함
-

예시 4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교과용 도서(검인정) 또는 학습교재(참고서, 문제집)를 저작하고 인세 등을 받는 경우

- ▶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교과서 출판 업무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자율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5 학원업을 겸하는 에듀테크 업체와 계약하여 교재 및 자료개발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

- ▶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 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검직 활동이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등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 또는 정부사업 관련 활동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의 겸직 허가 원칙

공무원 겸직 허가 심사 기준에 따라 직무 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 장의 겸직 허가*를 얻어 겸직 가능

* 직무 능률 저하 우려,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허가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 (범위)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성인 어학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단, 겸직 업체·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 *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 학원 등
-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나, 금지 대상 겸직활동,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활동 가능

예시 1 교원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 제작 등 활동을 하는 경우

-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교재제작 등 활동은 겸직활동의 목적, 계속성, 근무시간 내 활동 여부, 사교육 유발 영향(입시·편입 학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함

예시 2 교원이 입시(실기학원) 또는 편입 학원에서 강의하는 경우

-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편입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나, 사교육 유발 요인,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②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

- (범위) 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며, 복무 규정을 준수하여 활동 가능
 -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 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예시 1 학원과 관련이 없는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 ▶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겸직 허가 심사 대상이 되며, 공무에 부당한 영향 또는 직무 능률 저하 등 겸직 심사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활동이 가능함

□ 겸직 허가 절차

-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 (학교(원)장 등)
- (겸직 허가 신청)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상세 자료(<붙임2> 서식 활용 : 겸직 유형, 수익발생 내역, 사교육업체 연계여부 등 포함) 제출
- (겸직 허가 심사)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교육업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겸직심사위원회 필수 심의
 - (신청자료 검토) 신청자료를 토대로 업무 내용과 성격·수익·담당 직무와의 관련성과 관련 증빙 등을 검토
 - ※ <붙임 3> 서식의 겸직 심사 주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심사
 -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학원, 교습소 등 정보 확인 가능
 - (겸직심사위 의무화)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은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업무의 공개성 등 면밀한 심사를 위해 겸직심사위원회를 필수 운영

<<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구성) 교(원)감 포함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

※ 학교 여건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 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 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 (겸직 여부 결정)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 (결정·통보)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문 통보하고, 허가 기간 및 겸직 시 준수사항(겸직허가 범위 내 활동 등) 등을 사전 안내

-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교원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신청

□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 (실태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월·7월에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 겸직활동 준수사항 등을 조사

- 기존에 득한 겸직허가 중 본 지침에 반하는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 대상기관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

○ (관리·점검)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겸직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 및 결과 통보(시도교육청→교육부)

- 교육부는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겸직 관리의 적정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요구

□ 위반 시 엄정 처분

- 시도교육감은 사교육업체 관련 검직 등 위반 사항 발견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검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
- 특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사교육업체 관련 검직 허가 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양정 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엄격히 심사

<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영리행위 징계 양정 기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라.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 거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너.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정직-감봉 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너.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검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향후 계획

- 가이드라인 발표·확정(12월 4주)
- 교육청별 직무연수 반영(계속)
- 2023년 하반기('23.7.~12.) 검직 실태조사('24.1월)

참고

사교육업체 등 유형에 따른 겸직허가 기준

구분	원칙적 금지	겸직 허가 신청 가능	
	사교육업체(학교교과교습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업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성인 여학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p>※ 단,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 학원 등)는 엄격히 심사하여 겸직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법상 학원 및 학원업 종사자와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 - 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 EBS, 대학, 일반 교과 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 단,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더라도 특정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 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성이 있는 경우) 복무 규정 제25조 및 예규에 따라 금지 • (계속성이 없는 경우)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성이 있는 경우) 공무원 겸직 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겸직 허가 후 가능 • (계속성이 없는 경우) 겸직 신청 대상 아님 	

※ 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설립·운영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 1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순	구 분	주요 사항	
1	겸직허가 신청	겸직신청서 개선을 통한 심사 기초자료 강화	▶ 겸직유형, 구체적 겸직수익 기재(연간 예상 총수익 등), 사교육업체 관련성, 이전(최근 3년) 겸직내역 추가
2	겸직허가 심사	사교육업체 관련 금지되는 영리업무 사례 제시	▶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겸직활동이 가능한 업무 구분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활용 의무화	▶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확인 문항을 추가 하고 겸직심사 시 체크리스트 활용 의무화
		겸직심사위원회 기능강화	▶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예외적 겸직활동에 대해 목적(공익성), 겸직업무(공개성), 수익의 과도성 등 면밀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심사 의무화
		겸직허가 기간 단축	▶ 겸직허가 기간을 현행 2년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 ※ 현행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1년 이내
3	심사결과 통보	겸직허가 결과 통보 절차 준수	▶ 겸직허가 여부, 허가시간, 겸직 시 준수 사항 등 허가 범위 내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교원에게 통보
4	겸직실태 조사·관리	실태조사 서식 개선	▶ 학교명, 교원실명 기재,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및 겸직심사위원회 개최 여부 포함 등 서식을 개선하여 안내
5	위반시 처분조치	사교육업체 영리행위 시 엄정 처분	▶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사교육업체 관련 위반사항은 징계 양정 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엄격히 심사
6	기타	겸직관련 안내 및 홍보 강화	▶ 학교 및 교육청 교원 대상 복무(겸직허가) 관련 교육 실시 강화

교원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 직무	직무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소재지)				
겸 직 신 청 내 용	겸직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위/직무		겸직기간 (1년 이내)		
	겸직유형	- 겸직허가 유형 기재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 수익	- 수익 발생 형태 기재(수당, 건별, 기간, 월별, 연도별 수익 등) - 연간 총 수익예상액 기재(실수익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겸직실태조사 시 반드시 기관장에게 보고 및 재심사 여부 검토)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 겸직기관이 학원법 상 학원 또는 학원과 관련된 기관인지 여부 기재 ※ 학원의 경우 학원설립등록운영증명서를 통해 학원의 종류 등 기재 - 겸직활동의 사교육 유발 영향 또는 공익 목적 활동 여부 기재 ※ 콘텐츠 유·무상 제공 여부, 시중 출판 여부 등 기재			
이전 겸직허가 내역 (최근 3년)	- 겸직허가 연도, 유형, 업체 및 취득액 기재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근무시간 내 활동 여부)	- 문항개발, 문제집 제작 등 겸직활동은 고유 업무와 구분이 모호하므로 근무 시간 내 겸직활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				

<필수 첨부> 겸직 요청 관련 증빙서류[겸직기관의 요청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등]

20○○. ○○. ○○.

신청자 ○○○ (서명)

○ ○ ○ ○ ○ 귀하 (소속기관장)

붙임 3**교원 겸직 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사교육업체 겸직허가 심사 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내용입니다.
 업무담당자는 사안별로 체크리스트 외의 사항들도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허가 대상*인지? * 공무가 아닌 계속성 있는 영리·비영리업무		
-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업무로 볼 수 있는 영역인가? ※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은 업무에 해당하나 단순 취미활동, 학업 등은 업무로 볼 수 없음	예	아니오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계속성이 있는지?	예	아니오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해당 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 범위 밖의 사항인지?	예	아니오

2. 관련 법령 위반여부 검토

○ 겸직신청 업무 관련 법령에서 교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서 교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라 교원은 과외교습 불가	예	아니오

3. 사교육업체 관련 검토

○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사교육업체 관련 허가 가능 대상인지?		
- 사교육업체 관련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의 업무인지? ※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익 목적 컨설팅·콘텐츠 개발·자문 등에 한해 심사 가능	예	아니오
-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입시(실기학원), 편입 학원 등에 강의·출강하는 경우 또는 일반 교과학습도서에 수록된 유료 강의 동영상 제작 참여 등의 업무인지? ※ 입시·편입학원 출강, 인터넷 유료 동영상 강의 제작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금지	예	아니오

4. 겸직허가 요건 검토

○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지?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예	아니오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지?	예	아니오
- 겸직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력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예	아니오
- 기타 직무능력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예	아니오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겸직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지? *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겸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예:보조금 등 재정보조 제공, 인·허가 등에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도·감독, 국토계획·주택정책 등의 수립에 관여 등)로 판단	예	아니오
-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예	아니오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예	아니오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예)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	아니오

5. 최종 검토 의견

허가 여부	검토 의견
	(허가 시) 허가 기간 및 허가 범위 내 활동 등 준수사항 명시 (반려 시) 신청을 반려하는 구체적 이유 명시

붙임 4

겸직실태조사표

※ 1월 조사는 전년도 말일(12.31.), 7월 조사는 전반기 말일(6.30.) 기준으로 겸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표]

시도	설립 유형	학교 급	학교 명	직급	성명 (실명 기재)	겸직허가 내용				
						겸직 유형	겸직 기관	겸직 기간	직위·직무	수익 형태

겸직허가 내용			겸직실태 조사 내용				실태조사 후 조치내역
대가(수익)*	사교육업체 연계 여부	겸직심사 위원회 개최 여부	실제 겸직 수행 여부	허가 내용 일치 여부	겸직 요건 위반 여부	기타 의무 위반 여부	

* 연간 총 수익(예상)액 기재(실수익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겸직실태조사 시 반드시 기관장에게 보고 및 재심사 여부 검토)

1. 기본방침

가.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 외 계속성이 있는 다른 업무를 하거나 직을 겸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참조

나.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겸직 활동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가. 겸직 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나. 겸직 활동으로 직무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한다.
- 겸직 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겸직 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겸직 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행정사항

가.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자신의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나. 겸직 활동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붙임 6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교습과정 유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본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